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원장의 원아 건강검진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면제 근거 마련 〉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55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원장의 원아 건강검진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면제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성국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1.

3. 회부연월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장만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과태료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유치원 원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 왔음.

특히, 유치원 원장은 원아의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이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에도 보호자의 책임 소홀 등 여러 사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 원장이 그 책무를 다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처럼 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Ⅲ. 검토의견

□ 원장의 원아 건강검진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면제 근거 마련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이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과태료) ① (생략)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② ----- ----- ----- ----- -----다만,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제1항¹⁾은 유치원 원장에게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되,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35조는 원장의 유아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있음.

한편, 「영유아보육법」은 「유아교육법」 제17조와 같이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와 관련하여 제31조²⁾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부과하면서,

1)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 대하여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6조³⁾ 과태료 규정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책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실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책임 소홀 등의 사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과 유치원 원장과 어린이집 원장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는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검진기관에 실시 의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거듭 안내하였음에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3)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 면책규정 개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일부개정]
4. ~ 5. (생략)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지침), P. 100 >

원장은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 거부 시 원장은 3회 이상의 안내·요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가 수신 확인한 가정통신문, 알림장, 키즈노트 등)를 보관하고 건강검진 실시여부와 거부 사유를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

참고로, 건강검진과 관련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학교보건법⁴⁾」은 학교장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 의무를 두고 있으나 의무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없고, 「산업안전보건법⁵⁾」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음.

4)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③ ~ ⑦ (생략)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녀. 법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7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다만, 개정안의 단서 신설과 관련하여 제35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모두 명시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됨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건강검진 관련 원장의 의무이행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개정안과 같이 유치원 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건강검진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 제외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2